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농업·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안번호	제194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2. 11. 14.	회부연월일	2022. 11. 14.
1. 제안이유 <p>○ 원예·특용작물 재배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“화분교배용 수정별 지원” 및 “인공수분용 배 꽃가루 지원사업”에 대한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</p>			
2. 주요내용 <p>○ 가. 원예·특용작물 화분교배용 수정별 지원사업 추가(안 제8조제13호) 나. 인공수분용 배 꽃가루 지원사업 추가(안 제8조제14호)</p>			
3. 검토의견 <p>○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원예·특용작물 화분교배용 수정별 지원사업과 인공수분용 배 꽃가루 지원 사업을 추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</p> <p>○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</p>			